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615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2. 제 안 이 유

- 도시숲, 생활숲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과 반려동물 등이 방제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, 생활숲 등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과 반려동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방제지역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도시숲·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,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제10조에서는 생태적·경관적·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·관리하고, 제10조의2¹⁾에서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‘친환경 방제’를 하도록 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계획²⁾을 통해 산림 및 생활권 도시숲에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(산림병해충의 방제), 「산림병해충 방제규정」(산림청훈령) 및 「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」을 준용하고 있음.
-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는 비화학적³⁾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‘네오니코티노이드계⁴⁾ 및 고독성 농약’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, 각 기관에서 약제를 구매하는 경우 정원도시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약품의 독성을 관리·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1) 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(가로수는 제외한다)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,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) 2025년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추진 계획(자연생태과-822호, 2025.1.10.)

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·방제,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 장비 구입,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

3) 정원도시국 보도자료(2024.5.20.), 「‘꿀벌 독성’ 농약 사용 전면금지 … 산림병해충 무농약친환경 방제」 나방류 월동난 제거(동절기), 끈끈이롤트랩(유충기), 페로몬트랩(성충기) 설치 주요 시관리 공원(6개소) 친환경 방제 확대 시행('24년 4개소 → '25년 6개소)

4) 네오니코티노이드계(neonicotinoid) 농약은 해충을 죽이는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살충제이지만, 최근 환경보호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지양되고 있음

- 다만,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화학방제(저독성 위주)를 실시⁵⁾하고 있고 이 경우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, 병해충 방제 전에 해당 장소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이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
아울러 유아·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- 그 밖에 안 제10조의2에서 ‘병충해’와 ‘병해충’⁶⁾은 모두 맞는 표현이나 「산림보호법」을 준용하여 ‘병해충’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5) 등록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제품 사용 : 농약 독성 표기 중 ‘인축독성 IV급(저독성), 어독성 III급’ 약제 사용
※ 소나무재선충병 살포용 약제인 플루피라디퓨론(인축독성 III급)은 저독성의 대체 약제가 없어,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산림청 지정 약제로 피해(우려)지역에 한해 불가피하게 사용 가능

※ 그 외 약제는 농촌진흥청 「농약안전정보시스템」 등록 약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「유기농업자재공시정보」를 참고하여 선정

6) 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시장은 **병해충**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(가로수는 제외한다)에 대한 **병해충**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**병충해**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,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